

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

1. 변경 대상 펀드 : IBK 밸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

(변경 전: IBK 집중선택20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)

2. 주요 변경 사항

- ① 펀드명 변경
- ② 투자대상 모펀드 추가

3. 변경 시행일 : 2016년 12월 22일

4. 변경 대비표

항 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IBK 집중선택20 증권 자투자신탁[주식]”으로 한다. ②(생 략)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IBK 집중선택20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 2. IBK 증권 모투자신탁[국공채] 3. <신 설>	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“IBK 밸류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4호[주식]”으로 한다. ②(현행과 같음) ③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IBK 집중선택20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 2. IBK 증권 모투자신탁[국공채] 3. IBK 밸류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
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IBK 집중선택20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 및 IBK 밸류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나. IBK 증권 모투자신탁[국공채]에의	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 의 투자는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가. IBK 집중선택20 증권 모투자신탁 [주식] 및 IBK 밸류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나. IBK 증권 모투자신탁[국공채]에의

	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2. (생 략)	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%이하로 한다. 2.(현행과 같음)
부 칙	<신 설>	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